

# 예 산 총 칙

2017년도 추경 2 회

제 1 조 2017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구 분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합 계	341,912,338	10,257,370
일반회계	313,689,674	9,410,690
특별회계	28,222,664	846,680
기타특별회계	28,222,664	846,680
수질개선 특별회계	17,816,291	534,489
주택사업 특별회계	3,555,587	106,668
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	947,243	28,417
자활기금 특별회계	1,766,953	53,009
농공단지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	2,787,955	83,639
주차장관리 특별회계	770,537	23,116
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	423,788	12,714
기반시설 특별회계	32,078	962
발전소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	122,232	3,667

제 2 조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 예산"과 같다.

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별첨 "채무부담행위조서"와 같다.

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,538,865천원으로 한다.

제 5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(공기업 특별회계 포함) 지방채무차입한도액은 1,7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6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한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와 재해대책·복구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